

지난해 **235만 가구**가  
**1조 7천억원**을 받았습니다

일하는 즐거움 쌓이는 행복

# 근로장려금 · 자녀장려금 5월에 신청하세요~

**신청대상** 근로자와 자영업자

※ 신청요건은 뒷면 확인!

**신청기간** 2016. 5. 1. ~ 5. 31.

※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, 9월 말 지급 예정

**신청방법** ARS(1544-9944), 홈택스(인터넷, 모바일), 서면신청

※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참조



## 신청요건

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- ① **(가구요건)**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('97.1.2.이후 출생)의 부양자녀가 있거나, 50세 이상('65.12.31. 이전 출생)일 것  
 - 다만,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, '16.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「생계급여」를 받지 않았어야 신청 가능

- ② **(총소득요건)**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

구 분	단독가구	홀벌이가구	맞벌이가구
근로장려금	1,300만원	2,100만원	2,500만원
자녀장려금	4,000만원		

- ③ **(주택, 재산요건)** '15.6.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주택이 없거나 1주택을 소유해야 하며,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

※ 상세내용은 인터넷(국세청 홈택스 [www.hometax.go.kr](http://www.hometax.go.kr))에서 확인

## 심사·지급

- ① **(심사)** 5월에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,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9월말에 지급 예정  
 ☞ 심사진행상황은 인터넷 홈택스, ARS전화(1544-9944)로 조회
- ② **(지급액)** 「장려금 산정표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, 11의2)」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고 다만,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 50%, 소득세 자녀세액공제·부녀자공제 세액 차감 후 지급  
 ☞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([www.hometax.go.kr](http://www.hometax.go.kr)) 「모의계산(화면우측 상단)」에서 가능

## 유의사항

- ① **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확정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**
- ② 사업자등록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 **국민건강보험료 별도 부과** 등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- ③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**2년 또는 5년 동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**을 받게 됩니다.
- ④ 신청시 **휴대전화번호**와 **본인계좌번호**를 입력하면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

국세청은 장려금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